

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132
- 나. 발 의 자: 김현진 의원 외 8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11월 4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사업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11. 7. ~ 11. 1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최근 스톱킹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어, 스톱킹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2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행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용어의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안 제3조에서 스톱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톱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톱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톱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톱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톱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범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업무 수행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여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 및 시행(2021. 10. 21.)되어 스톱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스톱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전까지 스톱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단순히 ‘지속적 괴롭힘’이나 ‘장난전화 등’으로 분류되어 가벼운 제재에 그쳤으나, 잇따른 스톱킹 관련 강력범죄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조기 개입과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서둘러 법제화가 진행된 것으로
- 이슈가 되었던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의 스톱킹범죄 현황[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이나 경찰청 범죄통계[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¹⁾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우리 구 스토킹범죄 예방 추진사업 현황

○ **여성 안심 방범용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 3. ~ 12.
- 지원대상: 신변보호대상자 등 범죄피해 여성가구
- 지원물품: 실제 범죄피해 사례에 따라 방범용품 맞춤형 지원
※ 스마트 도어벨, 가정용 CCTV,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
- 소요예산: 10,000천원(구비)
- 추진실적: 30가구(2022. 10.기준)

○ **SS존(Safe-Sigle Zone)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2. 5. ~ 12.
- 지원대상: 1인가구, 여성1인점포,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우려 여성
- 지원물품 및 추진실적(2022. 10.기준)

구 분	지원물품	추진실적
1인가구 안심홈세트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긴급벨, 가정용CCTV, 창문잠금장치	여성 1인가구 - 70세대 남성 1인가구 - 2세대
여성1인점포 안심비상벨	점포 내 안심비상벨	여성1인점포 - 8개소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스마트도어벨, 가정용CCTV, 휴대용긴급벨 또는 문열림센서(택 1)	여성가구 - 27세대

- 소요예산: 34,000천원(시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